#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17

발의연월일: 2024. 9. 2.

발 의 자:김용민·황정아·위성락

강유정 • 한준호 • 임미애

주철현 • 이성유 • 서영석

민형배 · 김동아 · 박지원

서미화 · 김 현 · 서영교

전현희 · 장경태 · 김용만

의원(18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누구나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음. 딥페이크 대상이성인을 넘어 미성년자인 학생들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청소년의 범죄 노출도가 높아진 상황임. 불법 합성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,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과 다를 바 없음.

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에 비해 딥페이크 합성물의 처벌 수위가 약하고,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. 딥페이크 합성물을 불법 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,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한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한 자를 불법 촬영한 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한 자도 처벌하고자 함(안 제14조의2).

#### 법률 제 호

##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의2제1항 중 "5년"을 "7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5년"을 "7년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7년 이하의 징역에"을 "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"으로 하며,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까지의"를 "제4항까지의"로 한다.

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)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등) ① -----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 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・영상 물 또는 음성물(이하 이 조에 서 "영상물등"이라 한다)을 영 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• 합성 또는 가공(이하 이 조에 서 "편집등"이라 한다)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·합성 (2) ----물 · 가공물(이하 이 항에서 "편집물등"이라 한다) 또는 복 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 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

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<u>5년</u>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.

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<u>7년 이하의 징역에</u> 처한다.

<신 설>

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<u>제3항</u> <u>까지의</u>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<u>7년</u>
<u>.</u>
③
<u>3년 이상의 유기징</u>
<u>역에</u>
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
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・구입
•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
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
하의 벌금에 처한다.
<u>⑤</u> <u>제4항</u>
까지의
<u>.</u>